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16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6. 4. 21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2006. 1. 11.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에 의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
나.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규정함(안 제2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6. 3. 27 ~ 4. 17(20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조례 제정·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·개폐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조례 제정·개폐 청구 주민수)**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